

전기 Q&A



■ 변압기와 건물하부의 이격거리

관련조항 _ 판단기준 제44조

Q

변압기 윗면에 전기실을 설치하려 합니다. 이때, 변압기와 건물하부의 이격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요? (31조와 44조에 따르면, B의 이격거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.)

A

- 판단기준 제4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울타리·담 등과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에 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와 같기 때문에 이격거리는 판단기준 제108조와 같은 값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판단기준 제44조에서는 울타리·담 등과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에 관해서 정하고 있으나,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전기시설물의 이격거리로서 판단기준 제126조 (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)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치 등을 참고 하면 좋습니다.
- 그리고, 아래 표는 판단기준 제44조 해설에 있는 내용이며, 이 표와 판단기준 제108조, 제126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KEA

사용전압(kV)	최소 이격거리
7이하	0.5m
7초과 ~ 35이하	1.5m
35초과 ~ 80이하	2.0m
80초과 ~ 115이하	3.0m
115초과 ~ 175이하	4.0m
175초과	4m에 175kV를 초과하는 10kV마다 0.12m 추가